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87
----------	-------

발의연월일 : 2026. 4. 29.

발 의 자 : 박홍배 · 전진숙 · 박 정
부승찬 · 한준호 · 이정현
신정훈 · 김한규 · 박희승
윤준병 · 박정현 · 송재봉
서미화 · 김남근 · 박균택
이광희 · 이연희 · 홍기원
김태년 · 김영환 · 이정문
정태호 · 강준현 · 진성준
김우영 · 박해철 · 조승래
황명선 · 모경중 의원
(29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도입률이 장기간 정체 상태임.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유동성 제약 부담, 운용 전문성 부족, 행정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를 완화하고자 2022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도입 확대와 기금 운용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

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합의 취지를 반영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중소기업을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2028년 7월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나, 영세·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납입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산정 기준이 왜곡되는 과소·불완전 적립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률 제고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확산을 위한 운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용 대상을 근로자 100명 미만에서 300명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4호).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 법정 납입 기준액, 실제 납입액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납입 명세서를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0조제8항 신설).

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처리를 공단의 고유자산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안 제23조의3제2항, 제23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라.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을 지원하거나 모집하는 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6제4항 신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47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4호 중 “100명”을 “300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담금”을 “부담금(이하 “법정최소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사용자는 법정최소부담금과 실제 납입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법정최소부담금,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퇴직연금 납입 명세서를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제2항 중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를 “고유자산과 구분되는 독립된 자산으로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된 회계로 처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속하는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집행, 담보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해당 기금의 급여 지급

2. 기금 운용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자산을 다른 회계로 전용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준용한다.

⑥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및 재산운용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6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용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조력하거나 모집하는 업무(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조제8항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은 제23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2147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3. (생략)</p> <p>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u>100명</u>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p> <p>15.·16. (생략)</p> <p>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u>부담금</u>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p>	<p>법률 제2147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p> <p>제2조(정의) ----- -----.</p> <p>1. ~ 13. (현행과 같음)</p> <p>14. ----- -----<u>300명</u>----- ----- ----- ----- ----- ----- ----- ----- ----- -----.</p> <p>15.·16. (현행과 같음)</p> <p>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 ----- ----- ----- -----<u>부담금(이하</u> <u>“법정최소부담금”이라 한다)</u>-----</p>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신설>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생략)

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한다.

-----.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사용자는 법정최소부담금과 실제 납입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법정최소부담금,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퇴직연금 납입 명세서를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고유자산과 구분되는 독립된 자산으로서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된 회계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속하는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집행, 담보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해당 기금의 급여 지급
2. 기금 운용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④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자산을 다른 회계로 전용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신 설>

⑥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및 재산운용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설정) ① ~ ③ (생략)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설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용자가 중소기업퇴직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신설>

3. 4. (생략)

② · ③ (생략)

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조력하거나 모집하는 업무(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인적·물적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과태료)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제8항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